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6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추미애·송옥주·전재수

박균택 • 부승찬 • 전종덕

신영대 • 박희승 • 박선원

오세희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그런데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임에도 해당 사건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 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 추(訴追)에 관여할"을 "침해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①
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u>침해할</u>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② 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
	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
	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